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 2018-95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·신고를 득한 건축주에게
「건축허가·신고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」를 우편물 발송(등기)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
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18년 01월 15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


1. **공고내용 :** 건축허가·신고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2. **공고기간 :** 2018. 01. 15. ~ 2018. 01. 29.
3. **공고장소 :**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거주지 동사무소 게시판, 전국기초자치단체 게시판
4. **처분근거 :**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제14조 제5항
5. **처분대상**

연번	대지위치	건축주	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건축허가일자 (허가번호)	비 고 (반송사유)
		성 명	법인등록번호			
1	강서구 방화동 769-59	권미숙	670130-2******	건축신고 취소	2012-08-28 (2012-건축과-신축신고-4	수취인불명
2	강서구 방화동 247-34	허인선	630219-2******	건축신고 취소	2014-07-28 (2014-건축과-신축신고-7	수취인불명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강서구 건축과 (TEL : 02-2600-668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